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요 구

제 목	○○○ ○○○ ○○○ ○○○ 조성공사 부실시공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징 계 대 상 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 지방○○○○○ ○○○ (전 ○○과 지방○○○○○)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전 ○○과) ②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전 ○○과) ③ 광주광역시 동구 ○○○○○본부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6. 1. 18.부터 2017. 1. 6.까지, 지방○○○○○ ○○○은 2016. 7. 12.부터 2017.1.6.까지, 지방○○○○○ ○○○은 2016. 7. 25.부터 2017. 1. 6.까지, 지방○○○○○ ○○○는 2016. 7. 12.부터 2017. 3. 8.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과에서 동구 ○○○○○ 관리업무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 ○○○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동구 ○○○ ○○○ ○○○ ○○○ 조성공사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주요사업 내 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 ○○○ ○○○ 실시설계 용역	2016. 5. 23. ~ 9. 23.	19,900	9,950	9,950	실시설계	
○○○ ○○○ ○○○ ○○○ 조성공사	2016. 10. 7. ~ 11. 30.	347,674	173,837	173,837	아케이드 LED 조성공사 등	(주) ○○○

1. ○○○ ○○○ ○○○ ○○○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 ○○○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아케이드 레드사인 부분의 현재의 설계상 천장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와이어매쉬를 STS밴딩와이어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⁴⁾을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설계 변경되는 공사부분 중 와이어매쉬를 천장에 매다는 공정은 안전부분에 대한 중대한 수정사항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또한 목적물의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초 설계자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신청된 후 아케이드 레드사인 부분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면 및 물량산출서 등의 제공⁵⁾이 없어 설계 변경되는 부분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가 없었고,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도 아케이드 레드사인 부분의 구체적인 설계도면 및 물량산출서 등이 없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못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2. 설계내역서와 다른 규격의 와이어매쉬로 시공

천장 구조물 추락이후 정밀안전진단용역⁶⁾ 결과의 사고발생 원인분석에 따르면 사고발생현장에서 수거한 강선 [두께 1.6mm 및 고정철물(폭 10mm, 두께 0.4

4) 동구 ○○과-00000(2016. 00. 00.)호에 의거 사업비 31,33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결재 변경

5) 동구 ○○과에서는 시공사에서 간이로 작성한 설계서 및 설계도면으로 실정보고가 됨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성 검토과정 등이 없었음

6) ○○○○○○원('17. 7. 21. ~ 8. 14.)

mm)] 이 지지할 수 있는 무게를 시험한 결과, 강선(1.6mm)은 111kg, 고정철물(폭 10mm, 두께 0.4mm)은 62kg을 초과할 경우 파단(破斷)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철제 구조물의 추락 사고는 강선 및 고정철물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하여 찢김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추락한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었고,

또한 최초 설계도 및 설계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철제 구조물을 매다는 강선 두께가 누락되었으나 설계변경된 설계내역서 및 최종 완공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강선 두께를 2.5mm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정산되었는데 붕괴 후 정밀 안전진단용역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거된 강선의 두께를 확인한 결과 1.6mm로 시공되었다는 정밀조사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준공된 정산내역서상의 2.5mm와 다르게 1.6mm 두께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천정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3. 디자인전문업체의 설계 용역으로 철제구조물 인장력 등 검토소홀

실시설계자를 선정하고자 설계업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아케이드 레드사인 공사는 6개 단위공사 중 사업비가 197,327천원(공사금액 347,674천원의 57%)을 차지하는 주(柱)된 공사이고, 건축물에 구조물을 매다는 가장 안정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공사로서 건축설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설계하여야 함에도 전문성이 없는 산업디자인(시각) 등록⁷⁾ 업체에서 설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 연관된 철제구조물 인장력 등을 검토하지 못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초래하였다.

4. 계약담당자 고유권한인 수의계약 사업자를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선정

7) ○○○○○(90%)와 ○○○○○○○(10%)가 공동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 건축사무소는 천장구조물과 관련이 없는 공동조리시설(10%)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과업이 완료 됨

「지방계약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및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의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 부서에서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 ○○○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결정은 계약부서에 있는데도 ‘○○○ ○○○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 검토’ 보고서⁸⁾를 통해 용역수행 업체를 ○○○○○ 외 1개 업체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등 권한이 없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5. 특정대상시설물로 관리 누락 등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8) ○○○ ○○○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 검토보고서(2016. 0. 0.)에서 제1안으로 산업디자인 업체인 ○○하우스가 검토되어 설계업체로 선정됨 : 작성자 ○○○○계장, 보고자 ○○과장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⁹⁾하여야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그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시장 전체 건물에 대해 재난 예방 등을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관련 법 등에서 규정한 대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등 관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시장 전체 건물 연면적 10,904㎡ 중 2,451㎡만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하고 있는 등 재래시장의 시설 전반에 대해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 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되면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계

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별표1] : 중소형건축물 판매시설로 도매시장, 소매시장의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하여야함

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시장 아케이드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장 상인들로부터 집단 민원¹⁰⁾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특히 2016년 하반기에 아케이드 전반에 대한 하자검사를 누락함으로써 같은 건물 내에서의 아케이드 레드사인 공사와 사전에 안전성 연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상실하는 등 시장 내 아케이드 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2] 동구 ○○○시장 아케이드 공사 및 하자검사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하자담보 존속기간	하자 미실시	비고
○○○시장 아케이드 1차 보수공사	2013.0.00.~ 2014.0.0.	278	2014.1.20.~ 2017.1.19.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하반기	
○○○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	2014.00.00.~ 2015.0.0.	435	2015.2.16.~ 2018.2.15	2015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징계] 관련자 중 ○○○ ○○○○○○ 관리 및 관련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 ○○○, 지방공업서기 보 ○○○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0) 감사기간중 현지확인(2017. 0. 00.)한 결과 시장 상인회와 상인들 다수(13명 상당 면담)가 누수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시장 전체 구조적 안전진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도 아케이드 일부 공사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